

“혜영아, 영철아...아무리 못살아도...아무리 못살아도...”

머리를 하나로 절끈 묶은 키 작은 어머니와 금방 작업장에서 달려온 듯한 아버지가 싸늘한 화장터의 벽을 붙잡고 정신없이 흐느끼는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조차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나간 사이 불이 나서 고사리 손으로 방바닥을 헤매다 옷더미에 코를 박고 죽어갔다는 보도에 접하고 물어 물어 화장터까지 달려갔던 것은 86년부터 산동네에서 탁아소를 운영해오며 혜영이 어머니같은 사람들을 슬하게 보아왔던 탓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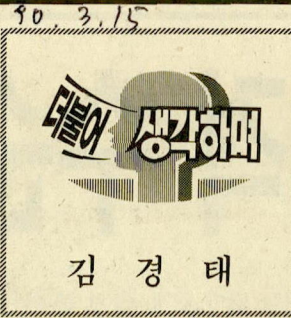
돈은 벌어야 하고 어린 자식을 돌봐줄 사람은 없어 도시락보자기 한 허리에 매어주면서 이집 저집 다니다 밥이나 쟁겨 먹으라는 어머니. 시골에 애들을 떼놓았다 다시 데려오고 다시 떼놓기를 수없이 울며 반복하는 어머니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헉헉대며 벌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전세값 마련 때문에 두 부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서민 대부분의 현실이다.

노동부가 잠잠집계한 89년 통

계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노동자는 47만 명이며 이를 다시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추산해 보면 1백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기혼여성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죄책감,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흔히 “여자가 벌면



탁아법 제정 더이상 미룰 것인가

얼마나 번다고...”하는 시선을 받아야 한다.

이제는 기혼여성을 내키지 않는 일터로 내모는 사회구조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보사부에서는 최근 맞벌이 가정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82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탁아수요 아동 중 8만7천명을 수용하는 탁아시설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사부의 이러한 정책

은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을 가정에 돌리고 당국은 이를 보완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82만명의 탁아수요 아동 중 탁아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8만7천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침이나 대책은 없는 것 같다. 또한 농촌에서 수로에 빠져서 수없이 죽어가는 농촌아동의 탁아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다.

탁아사업이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효과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같은 시설 마련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있는 지원대상의 명확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탁아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아동복지법 시행령만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현재 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아사업 또한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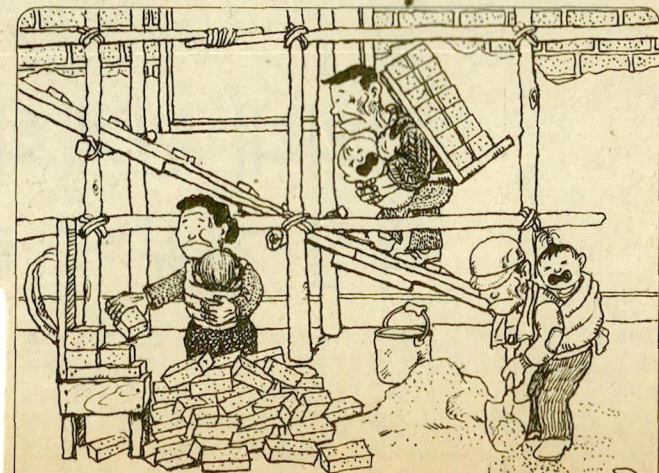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혜영이 남매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근에 새마을유아원이 있음에도 부모들의 노동시간과 맞지 않아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사부 정책의 비현실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올바른 탁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탁아법 제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해결돼야 할 때라고 본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만화초대석

최정현



맞벌이부부 자녀 질식사 이후

46